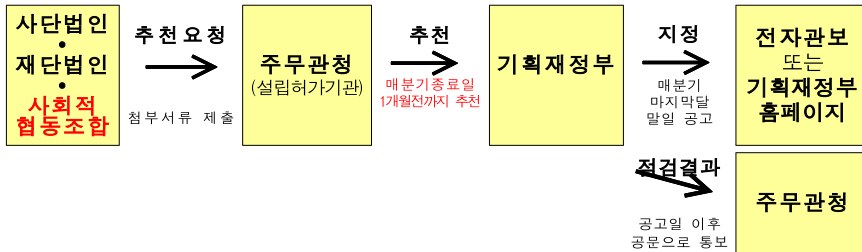


사단·재단법인·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방법

[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]

신규 신청하는 경우

1. 개 요



* 추천요청 기한은 **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추천**
(2014년 기준 : 1분기(2/28), 2분기(5/31), 3분기(8/31), 4분기(11/30))

2. 추천 대상법인 :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·재단법인·사회적협동조합

①	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②	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*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* [잘못된 사례]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, 유사한 다른 법인,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(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)
③	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할 것 *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(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)에 기재
④	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*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
⑤	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할 것
⑥	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%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*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,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

*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『협동조합기본법』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①의 요건 적용 배제

3. 추천시 제출서류

- ① 기부금단체 추천서(주무관청이 작성)
-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
-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
- ④ 정관
-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
-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(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,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)
- ⑦ 선관위의 유권해석 문서(정치활동을 했던 단체를 추천할 경우 선관위에서 그 활동이 「공직선거법」 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말함)
- ⑧ 재지정 추천시, **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보고서(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)**

4. 추천방법

- ①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
-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**마지막달 1개월전*까지** 추천서(제출서류 포함)**를 공문(전자문서)으로 기획재정부(법인세제과)로 제출
* 매분기별 추천기한(2014년기준) : 2월 28일, 5월 31일, 8월 31일, 11월 30일
**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제출(예외 불인정)

5. 지정기간

- ① 지정기간 :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.1부터* 6년간
*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
- ② 기부자 손비인정 (2011.1.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)
 -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 인정
 -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 내에서 손비 인정

※ 손비 인정되는 금액 계산 사례

1. 본인의 소득금액이 1,0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:
⇒ 100만원 손비인정(∴ 1,000만원×30%=30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)
2. 본인의 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개인이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:
⇒ 60만원 손비인정(∴ 200만원×30%=60만원 범위에서 손비 인정), 40만원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

6. 이행의무 및 사후관리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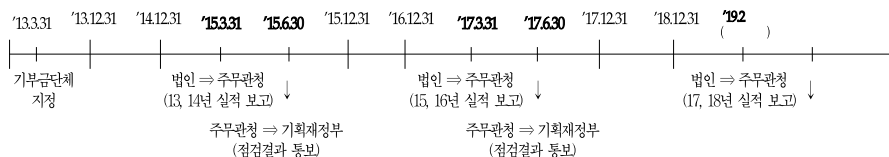
① 기부금 단체

- 1) 지정 후 2년마다 **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**를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**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**
 - * 1~2년차 실적은 3년차에, 3~4년차 실적은 5년차에, 5~6년차 실적은 재지정신청시 제출
 - * **2010년 이전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**되어 지정기간이 남아있는 **법인**의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 후 최초로 재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**2010.2.19일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**,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에 **통보**
- 2)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3호의3 서식(또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5호의2 서식)으로 발급
- 3) 2)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(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2 서식,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의7서식(1))
- 4) 관할세무서장이 3)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- 5) 2)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5호의3 서식)

② **주무관청** : ①의1)에 따라 제출*받은 자료의 **점검결과(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)**를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**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말**(5·6년차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)까지 기획재정부에 **통보**

*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

<사례> 2013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



7.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

-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-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경우나.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
 - 다.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④ 법인의 대표자, 대리인,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

8. 재지정 배제사유

-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“7.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”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

지정기간(6년)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

- 원칙적으로 「신규 신청」 절차와 동일(공문에 ‘재신청’ 표기)
다만, 주무관청은 2010.2월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를 재지정 추천시 기획재정부로 통보

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
-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
-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**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***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(전자문서)으로 기획재정부(법인세과)로 명칭변경 의뢰

* 매분기별 접수기한(2014년도기준) : 2월 28일, 5월 31일, 8월 31일, 11월 30일

가. 개정 전·후 정관(신규 대비표 첨부,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)

나.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

-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

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

사업연도 (과세기간)	
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1.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단체)	① 단 체 명		② 대 표 자	
	③사업자등록번호 (고 유 번 호)		④ 전화번호	
	⑤ 소 재 지			
	⑥ 유 형 (해당란에 √)	☐ 정부등 공공 ☐ 교육 ☐ 종교 ☐ 사회복지 ☐ 자선 ☐ 의료 ☐ 문화 ☐ 학술 ☐ 기타		

(단위: 원)

⑦ 구 분 ⑫ 기부자	⑧ 합 계		⑨ 법정기부금		⑩ 특례기부금		⑪ 지정기부금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법 인								
개 인								

이
예
제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1. 기부내역의 ⑦코드란은 법정기부금(10)·정치자금(20)·진흥기금출연(21)·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그 밖의 기부금(30)·지정기부금(40)·종교단체인기부금(41)·우리사주기부금(42)·그 밖의 기부금(50)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.
2.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, 나머지 1부를 편철·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.

1.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(과세기간)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⑥ 유형란: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(단체)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.
3. ⑧ ~ ⑩ 란: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.